

종합허가과

주요사업

1.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

신규사업

1. 공장설립 관련 사전홍보 및 지도
2.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

주요사업

1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

- ◇ 시민편의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로 인·허가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도모
 - ◇ 민원처리의 중간 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
-

□ 추진개요

- 민원서류 간소화로 시민에게 편의 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
-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
- 타 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민원처리 단계별 통보 및 결과 설명으로 민원인 불편해소

□ 추진상황 및 계획

- 민원 서류의 공부확인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
- 복합민원 발생시 부서간 원활한 협조로 신속한 민원처리
- 민원의 보완 및 불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처분사유를 직접 설명 및 대안을 제시

□ 기대효과

-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제공 및 행정신뢰도 제고
-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

신 규 사 업

① 공장설립 관련 사전홍보 및 지도

- ◇ 신고누락 등으로 공장설립 취소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실시
 - ◇ 기업의 피해 사전 예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
-

□ 추진개요

- 기 간 : 2019. 2 ~ 12월
- 대 상 : 공장설립 착공 및 완료 신청대상자
 -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(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)이 지날 때까지 미착공
 -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-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
 -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
 -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점검반 : 2명 (기업민원계장 외 1명)

□ 추진계획

- 계획 수립 : '19. 2월
- 홍보 및 지도 : '19. 3월~11월

□ 기대효과

-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- 시민(기업)의 행정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

②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

- ◇ 인·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정성 보장 및 시간적, 경제적 부담 절감
-

□ 추진개요

-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아 경제적 손실 방지

□ 추진계획

- 계획수립 : '19. 1~2월
- 계획추진(홍보) : '19. 3~12월
- 주요내용
 - 대상민원 : 공장설립승인, 농지·산지전용, 개발행위, 건축허가 등
 -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, 설계,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
 -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
 - 처리절차
 - 사전심사청구서,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 검토
 -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서와 협의·검토하여 결과 통지

□ 기대효과

-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시간적·경제적 부담 경감
-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행정신뢰도 향상